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9일, 허종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5.)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5.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허종식의원)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민간 등 송전사업자 외의 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적·실무적 한계를 보완하여 대규모 전력 인프라

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다만, 개정안은 민간이 설비를 건설한 후 준공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민간 자본 조달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과도한 정산금 지급이나 부실 자산 인수에 따른 공공의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엄격한 자산 평가 및 비용 정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